

서울특별시 서부아동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142
----------	------

2017년 11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10월 24일
3. 상정일자 : 제277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 11월 27일 상정의결 (원안 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 아동양육시설의 정서·행동 장애, 학교 부적응 아동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내 노란꿈터의 상담치료기능을 분리 강화하여 전문적 개입 치료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 전문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맞춤형 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민간위탁 추진 개요 및 경위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부아동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것임.
- 시장이 민간위탁 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보호대상 아동의 일시보호 및 상담·치료·보호·교육’ 등 임.

2. 시립 아동상담치료센터 운영 현황 및 확대 개요

- ‘아동상담치료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3호2)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로, 현재 서울시립 시설은 동대문구에 소재한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가 유일함.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2.(생략)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 1988년에 개소한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는 정원 90명의 시설로 보호대상 아동의 상담·치료·보호 및 일시보호와 아동학대에 대한 발견, 예방, 보호 치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사무는 민간위탁(수탁자: ((재)천주교 썬뜰수도원유지재단)으로 운영되고 있음.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운영 현황〉

소재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운영법인	재단법인 천주교썬뜰수도원 유지재단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상담·치료·보호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일시보호 - 아동과 그 가정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적 상담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개별상담, 집단상담 및 교육 - 아동학대에 대한 발견, 예방, 보호, 치료 -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요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 4. 서울특별시립동부아동상담소 개관 - 2000. 8.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서울시에서 설치 - 2000. 10. 서울시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 개설 (명칭변경 2006. 4 이후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 2008. 5. 기관명칭변경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 2013. 11.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와 서울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분리 																																							
시설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6,612.1㎡ - 시설연면적 : 5,568.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관:3,891.91㎡ (지하 1, 지상5층) · 별관:1,676.76㎡ (지하 1, 지상 2층) 																																							
조직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사무국</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사례관리국</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일시보호국</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15%;">임시보호조치실</div> </div> </div>																																							
직원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상담치료센터 (아동정원: 90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센터장</th> <th>국장</th> <th>과장</th> <th>팀장</th> <th>상담원</th> <th>임상심리사</th> <th>사회복지사</th> <th>간호사</th> <th>영양사</th> <th>사무원</th> <th>기능직</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정규직</td> <td>1</td> <td>3</td> <td>4</td> <td>2</td> <td>5</td> <td>2</td> <td>16</td> <td>겸직</td> <td>1</td> <td>2</td> <td>10</td> <td>46</td> </tr> <tr> <td>간임직</td> <td>1</td> <td>3</td> <td>4</td> <td>2</td> <td>5</td> <td>2</td> <td>16</td> <td>겸직</td> <td>1</td> <td>2</td> <td>10</td> <td>46</td> </tr> </tbody> </table>	구분	센터장	국장	과장	팀장	상담원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기능직	계	정규직	1	3	4	2	5	2	16	겸직	1	2	10	46	간임직	1	3	4	2	5	2	16	겸직	1	2	10	46
구분	센터장	국장	과장	팀장	상담원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기능직	계																												
정규직	1	3	4	2	5	2	16	겸직	1	2	10	46																												
간임직	1	3	4	2	5	2	16	겸직	1	2	10	46																												

- 금번 ‘서울특별시 서부아동상담센터 운영’ 추진은 최근 서울시립 아동복지시설인 ‘꿈나무마을 운영개선 마스터 플랜³⁾(이하 “계획서”라 함)’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동 계획서는 600여명의 대규모 시설로 운영되던 시립 꿈나무마을 시설 내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아동 개인별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며, ‘서부아동상담센터’ 설치에 이 계획서에 따라 꿈나무마을 생활아동의 정신건강서비스 강화하고 꿈나무마을 기능을 다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계 됨.
- 최근 정서문제 행동 아동의 증가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꿈나무마을 아동을 대상으로 문제행동 및 정신장애 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16.2%가 ‘문제행동 위험군’에 속한다는 연구결과가 도출 되어진 바, 이에 서울시는 증가하고 있는 문제행동아동에 대한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꿈나무시설 내 유희공간을 이용하여, 시립 아동상담치료센터 한 개소를 더 설치하려는 것으로, 동 센터의 설치운영의 취지는 그 긍정적 의미가 크다고 보여짐.
- 금번 동의안은 상기 ‘서부아동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임.

3) 동 계획서는 ‘서울시립 꿈나무마을 생활아동복지증진 및 기능 다각화 방안(2016. 김형모 외)’ 연구와 서울시 인권담당관 및 조사담당관 조사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임.

3.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할 것이 요청됨.
- 그런데,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려는 ‘서부아동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심리·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경계선 및 학교 부적응 아동에게 전문적인 개입 치료를 위한 것으로, 대체로 비권력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사무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특별한 문제는 초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이는 현행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4)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적합여부와 동 조례 제6조5)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내용으로서의 적합여부를 판단해 볼 때,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상기의 ‘서부아동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동 사무는 아동의 심리·정서상 문제에 대한 종합검사 및 임상치료(개별·집단 상담, 모래·놀이·원예 치료 등) 또는 행동 중재 프로그램 운영 등 그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 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할 것임.
- 이에 이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아이디어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측면이 크다고 판단됨.
- 참고로, 동 사무는 신규 민간위탁 사무라는 점에서 관련 예산 현성 이전 단계에서 동 사무에 관한 의회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
-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종합의견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서부아동상담센터 운영’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법적 요건 상 특별한 문제가 없고, 해당분야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고 전문적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행정사무의 효과성과 재정효율성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142
----------	------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아동양육시설의 정서·행동 장애, 학교 부적응 아동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내 노란꿈터의 상담치료기능을 분리 강화하여 전문적 개입 치료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 전문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맞춤형 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사무명 : 서울특별시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시장방침 제81호('17.4.10, 꿈나무마을 운영개선 마스터 플랜)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는 현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와 같은 기능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가 필요

-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 개발, 맞춤형 치료서비스 제공 및 생활아동 학습문제 해소를 위해 대안학교 병설 운영 등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관련기관 물적·인적자원의 협업능력이 필요함

다. 위탁사무 내용

- 보호대상 아동의 일시보호
- 보호대상 아동의 상담·치료·보호·교육(중·고 대안학교 운영)
- 아동과 그 가정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적 상담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개별상담, 집단상담 및 교육
-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소재지 : 은평구 백련산로 14길 20-11
- 규모 : 연면적 4,713.91㎡, 지상1~7층, 아동정원 60명
- 시설위치 :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내 노란꿈터(건물)

마. 민간위탁기간 : 2년('18.1.1~'19.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 ※ 수의계약 사유 : (재)마리아수녀회와 '19.12.31까지 4년간의 위탁 협약이 기 체결 된 상태로 기능 강화를 위해 시설 분리 위탁하는 사항이기에 잔여 위탁 기간(2년)을 수의협약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298,511천원

- 종사자 인건비 : 2,153,904천원 [= 46명 × 46,824천원
(5급 10호봉 기준 연봉)]

- 시설관리운영비 : 144,607천원 [= (1개소 × 500천원 × 12월) +
(60명 × 192,510원 × 12월)]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2017년 제6차)

연번	부서명	위탁사무명	유형		수탁기관	위탁기간	심의사항	심의결과
7	가족담당관	서울특별시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운영	시설	신규 (수의계약)	(재)마리아수녀회	2년	위탁사무 등 타당성 등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2016.2.3.>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2.1.26.>

[제목개정 2011.8.4.]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8.3., 2016.8.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8.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제23조에서 이동 <2012.8.3.>]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치 및 명칭
2.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
3. 위탁기간
4. 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 등

③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7.30., 2017.1.5.>

[전문개정 2011.7.28.]

나.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